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24일

나. 발 의 자: 김춘남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2024년 5월 24일

라. 상정일자: 2024년 6월 4일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김 춘 남 의원

나. 제안이유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미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 조사(안 제4조 ~ 제5조)
-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안 제6조)
- 중점관리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7조 ~ 제8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130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11조, 별표5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조의2, 제4조의3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조례안은

- 구미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정의(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구분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관련법령
중대재해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동시 2명 발생	부상자 또는 질병자 동시 10명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 산업 재해		6개월 이상 치료 동시 2명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 1년 이내 3명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중대 시민 재해		2개월 이상 치료 동시 10명 발생	동일한 원인 3개월 이상 치료 동시 10명 발생	

- 상위 법령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지역사회,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 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해당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가 중대시민재해에 맞춰져 있으며, 기존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시행중에 있으므로, 추후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매년 1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